

## 홈리스, 또는 세계의 상실

사사누마 히로시(번역 김영수)

주소를 공원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노숙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재판을 통해 나는 노숙자가 당연한 권리를 얼마나 박탈당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 재판은 단지 주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숙자도 인간이라는 것을 행정으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재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주소재판 원고 야마우치 씨의 진술 01

동물이라도 밤에 안심하고 잘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 홈리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다. 짐보따리도 안 돼, 천막도 안 돼, 이래서는 ‘죽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노숙자 A씨의 소리02

### 0. 주소재판의 충격

오사카 시내의 공원 두 곳에서 행정대집행을 앞둔 2006년 1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작은 판결 하나를 내렸다.03 그것은 어떤 남성이 4년간 계속 거주해 왔던 장소를 주소로 인정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장소가 공원이고, 남성이 거주하고 있던 주거가 천막이었다는 점에서 오사카뿐만 아니라 전 일본에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왜일까?

재판소가 홈리스들에게 공원에 거주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등, 불법점거를 용인했다는 등 오해로 인한 여러 시비가 있지만, 판결 자체는 그 남성이 공원 내에 천막을 치고 거주하기 위한 점용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주소의 인정 여부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판단될 뿐이며, 그 장소에 점용권이 있는가 아닌가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경악했던 것인가? 그것은 단지 오해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판결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주소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곳에 어떤 남성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왜 이다지도 중대사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쓰레기처럼 배제돼야 할 존재였던 홈리스들도 이 세계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인간이며 시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공원이라는 특정 장소를 점유하여 거주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 거주한다는 것,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거주할 장소를 갖지 못해 공원 같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잠자리를 구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배제되고 습격의 대상이 되었던 홈리스들은, 이 세계에서 거주할 자격을 박탈당해 왔던 것이며, 소위 세계를 빼앗겨 버린 존재였다. 이 판결은 홈리스들에게 세계를 되돌려 준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홈리스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거주해 온 주거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즉 그들의 주거 방식, 천막을 치고 사는 삶의 방식으로 세계를 바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유롭고 새로운 공간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 1. 홈리스라는 현실

홈리스란 무엇인가? 2002년에 제정된 ‘홈리스의 자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자립지원법) 2조는 홈리스를 “도시 공원, 하천, 도로, 역사, 기타 시설을 근거 없이 기거의 장소로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homeless’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것도 글자 그대로 길 위나 공원에서 잘 수밖에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공원이나 길 위에서 노숙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사람들, 즉 노숙자만을 홈리스라고 부름으로써 이중 삼중의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자립지원법 14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2003년 3월에 공표된 ‘홈리스 실태에 관한 전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노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은 25,296명이며 일본 전국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남성이 20,661명으로 81.7%, 여성은 749명으로 3% 그리고 성별불명이 3,886명으로 15.4%.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자 대부분(3,068명)은 오사카에 있다. 연령은 50~64세가 65.7%로 평균연령은 55.9세이다.

약 60%의 사람들이 월 3만 엔 미만의 수입만으로 살고 있다. 그 수입 중 85%가 일을 해서 번 것이다.

노숙 상태가 된 이유는 ‘일거리가 줄었다’가 35.6%로 가장 많고, 그에 이어 ‘도산, 실업’이 32.9%, ‘병, 부상, 고령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가 18.8%, ‘수입이 줄었다’가 16.4%로 대부분이 ‘실업’ 등 일이 없어짐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이 단신(單身)으로서 결혼 경험이 없는 이도 반 가까이나 된다(46.3%).

이런 조사 결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연령이나 노숙에 이른 이유를 보는 것만으로도 일본의 노숙 문제가 고용 문제와 사회보장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하고 있었을 때도 불안정고용으로서 가정을 꾸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반 가까이 되며,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반이다.

이 조사로부터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숫자로 파악된 사람들 대다수는 공원이나 하천 부지에 천막 등을 치고 눈에 띄게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겉잡힌 것은 성별불명이 15% 이상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 대부분이 오사카에서 조사된 인원인데, 이는 성별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차림새였다는 것은 아니고 낮에 당사자가 없을 때 천막 숫자만 세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중 공원 등에 천막이나 움막을 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적다. 많은 사람들이 천막 없이 밤에 길 위에서 골판지상자를 펴고 잔다. 아침이 되면 잠자리를 치우고 흔적 없이 깨끗하게 사라진다. 바로 조금 전까지 그곳에 사람이 누워 자고 있었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는 것일까? 숫자로 파악될 수도 없는 삶. 그것이 일본의 노숙자들이다. 홈리스들의 존재는 아직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홈리스들을 보았다 하더라도 홈리스라고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은 홈리스들도 그저 보통 인간일 뿐이다.

우리가 지역에서 야간 순찰을 시작했던 당시, 어느 버스 종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몇 대의 막차가 떠난 후였는데, 손님 몇 사람이 있었다. 얼핏 보아 노숙을 하고 있는 듯한 벤치에 걸터앉아 있는 세 명의 남자들에게 조심조심 말을 걸자, 그 중 70세 가까워 보이는 고령의 남자는 “나는 노숙 따위 하지 않아, 집이 있어”라며 훌쩍 일어서 버렸다. 그 옆의 60

세 정도인 남자는, “나는 노숙하고 있는데……”라고 가볍게 응해 주었다. 이 버스 종점에는 몇 명이나 노숙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다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살펴보니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거의 전부 노숙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막차를 놓친 보통 손님들로 보였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저 여기에서 잠들 수 있는 시간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약간 지친 느낌은 있으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다. 그들도 그저 인간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홈리스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하도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젊은이 때문에 깊이 잠들기가 힘들다. 그것은 천막 없이 노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추운 겨울이 되면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잠들 수도 없을 정도로 추워져서 해가 뜰 때까지 주변을 걷기도 한다.

천막 움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도 항상 쫓겨날 압력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행정대집행 절차로 혹은 그 절차도 없이 천막이나 짐보따리를 철거당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불과 몇 시간이나 안심하고 몸을 누일 수 있는 장소조차도 없다. 어떤 동물에게도 자신의 신체를 눕혀 잘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으나 홈리스들에게는 그것조차 없는 것이다.

## 2. 홈리스, 혹은 홈이란 무엇인가

다시 홈리스란 무엇인가? 유럽의 홈리스법이나 사회권규약<sup>04</sup> 11조를 참조한다면, 일단 무언가 권한을 갖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를 갖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홈리스라는 의미가 충분히 명확해지지 않는다. 홈리스란 주거를 갖지 않는다는 문제일 뿐일까? 이것을 거꾸로 홈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생각해 보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을 우선 특권적 공간인 ‘집’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집은 세계 가운데서 우리들이 차지하는 한 구석”이며 “우리들의 최초의 우주이다”<sup>05</sup>. 그리고 바슐라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의 가장 귀중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집은 몽상을 지켜 주고, 집은 몽상하는 일을 보호해 주고, 집은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꿈꾸게 해 준다고.<sup>06</sup>

꿈꾸는 공간이야말로 집인 것이다. 이것은 단지 밤에 몸을 누어서 잠들고 꿈꾸는 장소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저런 꿈을 곰곰이 꾸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다.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행복을 생각하고 추구해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홈인 것이다.

행복이라는 말에는 나이브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말은 근대 입헌주의의 기초개념이다. 대영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완수했을 때 북미 13주 모두는 일치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들은 다음 사항을 자명한 진리라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고 조물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그 후 한 세기 반이 지난 뒤 일본 헌법은 13조에서 개인을 존중할 것을 선언하고,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 보장하였다.

홈이란 우리들이 이 세계에서 장소를 점하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조건 즉 인권의 기초인 것이다. 그렇지만 홈은 인권의 기초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다.

우리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전제는, 우선 이 세계 안에서 타자와 함께 살고 있다. 타자와 관계 맺으면서 자아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타자와 관계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이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안에 위치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조건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들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컵 안에 물이 있다든가 이불장 안에 옷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세계 안에 그저 객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안에 거주하고 있다wohnen, habitare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에 관여하고, 융화하고, 세계에 친숙해져서, 세계를 돌보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in’(안)은 ‘거주하다’, ‘체류하다’를 의미하는 ‘innan’에서 유래한다. ‘an’(~에서)은 ‘나는 습관이 되었다’, ‘~와 친숙하다’, ‘나는 어떤 것을 보호한다’를 뜻한다. 그것은 ‘나는 거주한다’와 ‘나는 사랑한다’는 의미로 ‘나는 돌봐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82쪽07

이러한 의미의 ‘내(內)-존재’를 갖추고 있는 존재자가 나 자신인 존재자, 인간인 것이다.

이 세계 내에서 타자와 함께 이것저것 신경 쓰며, 보호하고, 친숙해지고, 돌봐 주며, 애착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것을 세계 내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우선 어쨌든 ‘거주하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 특징Grundzug은 거주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 비로소 죽어야 할 것으로서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08 타자와 세계의 여러 존재들과 다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세계 내에 거주한다고 할 경우 ‘공중에 떠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 거주할 장소, 즉 주거할 장소가 없으면 안 된다.09

우리들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거주 장소를 갖는다는 것은 타자와 만나는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존재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자와 배려하며 친숙하게 왕래한다는 의미로 세계 ‘안’에 존재한다.— 『존재와 시간』, 148쪽

타자와 만나는 것은 공간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내-존재를 위해서 구성적인,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를 만나게 함은 일종의 ‘공간 내 줌’이다. 이러한 ‘공간 내 줌’은 ‘공간 마련’Einräumen이라고도 칭한다.— 『존재와 시간』, 156쪽10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세계 내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타자와 함께 거주하는 거주 장소, 타자와 만나는 공간을 갖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재 조건이란 거주하는 장소를 갖는다는 것과 타자와 만남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홈리스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 세계 안에서의 거주 장소가 없다는 것이며, 세계 내에 공간을 갖지 못하고 존재하는 것을 허용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타자와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것이지만, 홈리스들은 세계 안에서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안심할 수 없는 것, 즉 불안은 거주 장소, 요컨대 집에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 속에서는 사람이 ‘섬뜩’Unheimlichkeit해진다. 거기에서는 우선 현존재가 불안 속에 처해 있는 그곳의 독특한 무규정성이, 즉 아무것도 아님과 아무 데도 없음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섬뜩함은 거기에서 동시에 ‘마음이 편치 않음’Nicht-zuhause-sein을 의미한다.— 『존재와 시간』, 257쪽

이 세계 내에서 타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용받지 못한 존재, 그것이 홈리스들이다. 홈리스란 세계의 상실, 아니 박탈이다.

다음의 지적은 아렌트가 테러를 본질로 하는 전체주의사회에 대해 말한 것인데, 이는 홈리스들에 대한 배제와 습격뿐 아니라 주민의 상호 감시와 이질적인 것의 배제를 진행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테러의 외적 강제는 자유의 공간을 파괴함과 동시에 인간 사이의 관계 일체를 없애 버리고 만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밀착되어 버리면서 다른 한편 각 개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격리되고 있다.(중략)

테러의 목적에 들어맞는 자기 강제적인 사고가 현대인에게 미치는 큰 매력은, 현실 및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현대의 대중은 이 세계 안에서 진정 편안한at home 느낌을 갖지 못하면 못할수록 모든 것이 알려지고, 설명되고, 초인간적인 법칙에 의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바보들의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내져 버리기에 적당한 자격을 얻게 된다.11

물리적으로는 우리들과 홈리스들이 가깝게 접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만나는 일은 없다.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홈리스들이 신체적,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인 배제와 습격은 가장 단절된 형태의 것이기도 하다.

설령 타자와 공간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만나는 것을 저지당하고 거주 장소를 빼앗기며 세계를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홈리스라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 조건을 빼앗는 배제라는 근원적 폭력에 노출되어 그 상태로 살아남은 홈리스들이야말로 생존자라고 불리기에 적합할 것이다. 타자와의 단절, 고립은 그 자체로 홈리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력화시켜 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그 때문에 홈리스들에게 단지 물질적인 집을 주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존재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다.

심적 외상의 중핵이 되는 경험은 무력화disempowerment와 타자로부터의 단절이다. 그 때문에 회복은 생존자의 활력화empowerment와 새로운 관계의 창출에 기초한다. 회복은 여러 관계의 맥락 중에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며, 고립 중에는 불가능하다. 자신과 타자와의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연결 가운데서 생존자는 트라우마적 경험에 따라 손상되고 왜곡된 심리적 능력을 재창출(재생)하는 것이다. 이들 능력은 신뢰, 자율, 자발성, 적응성, 정체성, 친밀성 등을 위한 기본적 능력을 포함한다. 이들 능력이 타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타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재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sup>12</sup>

단절된 타자와의 연결,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문제이다.

### 3. 울타리 치기와 배제

일본 헌법 25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정하고 있고, 생활보호법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일본에서 실업으로 인해 생활 곤궁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홈리스로 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제<sup>13</sup> social exclusion라는 시민권의 전면적 박탈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홈리스라는 존재가 성립하는 전제로는 우리 사회 자체의 성립 조건이 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사적 울타리 치기와 근원적 배제eviction이다

#### 1) 세계의 사물화와 잔여로서의 공물(公物), 그리고 공사(公私)의 전도(顛倒)

사람들은 홈리스들이 공원이나 하천 등 공물, 공공시설에 멋대로 천막을 치고 그곳을 사물화(私物化)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기 위해 천막을 철거하고 홈리스들을 배제하자고 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는 이중 삼중으로 전도된 이야기가 아닐까? 원래 이 세계는 누구의 것도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세계,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대부분에 울타리가 쳐지고 사적으로 소유되게 되었다. 그 기원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법의 세계에서 확립된 그날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다.

1789년 프랑스에서 발표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 17조에는, 인간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소유권을 유일신성하며 불가침의 권리로 정하였다. 이것에 의해 세계에 울타리를 치고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시민혁명은 봉건적 신분관계와 토지에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을 그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차별이 없으므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탄생시켰다.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얻고 어디라도 좋아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함께 살아, 나날의 일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확립되고 동시에 자본주의질서의 기초가 잡히게 되었다.

확실히 시민혁명은 모든 개인을 해방시키고 새롭고 자유로운 공간, 모든 사람이 각자의 거주 장소를 가질 수 있는 세계, 즉 공공성을 만들어 내야 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거

주할 장소가 확보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해방된 공간은 바로 사적인 논리 즉 소유에 의해, 이번에는 한층 더 강고하게 재코드화되었다. 사적으로 울타리가 쳐진 세계, 토지가 사유화된 세계에는 이미 갖지 못한 자들이 차지할 장소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적으로 울타리 쳐진 방대한 공간의 틈새나 외부에 아주 작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이 남겨져 사적인 세계에 거주 장소를 갖지 못한 사람들, 빈곤하고 병을 지닌 자들이 몸을 감추고 숨어 살게 되었다.

열려 있어야 할 공공성은 사적으로 울타리가 쳐져 조각나 버렸다. 그리고 사적으로 울타리가 쳐진 세계를 무대로 하여 사적으로 독점된 거주 장소를 가진 부르주아시민들에 의해 위장된 공공성, 즉 시민사회가 성립된다. 근대의 공공성은 사적인 ‘울타리 치기’ 위에 구축된 것이며, 공공성이라 말해지는 것 자체가 실은 사적 기원을 갖는 것이어서, 이 말에는 공사의 전도가 내포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자유·평등이 선언되었지만, 이 세계에서 거주 장소를 빼앗긴 갖지 못한 자들은 배제되었다.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적 울타리 바깥에 있는 약간의 공물과 공공공간을 피난처로 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은혜라도 베풀 듯이 허용되거나 혹은 묵인되었다. 배제되고 갖지 못한 자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야말로, 과거 누구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었던 세계의 흔적으로서의 공공적인 공간이다. 물론 이미 사적 소유물로 울타리 쳐지고 난 세계의 자투리로 규정된 공공공간은 완전히 사적인 논리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허구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가정함에 의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세계의 이름을 겨우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울타리 쳐진 세계에서 거주 장소를 잃어버린 홈리스들도 그곳을 주거로 할 수 있다. 노숙 행위는 공공성에 의거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근대에 들어서 공간이 사적으로 울타리 쳐짐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보편적 인간의 권리가 부와 교양을 가진 부르주아에게 독점되었고, 부르주아의 허구의 공동성으로서 시민사회가 성립되었다. 이 시민사회의 공공성은 집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사적인 울타리 치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사적인 것이며, 반대로 사적으로 울타리 쳐진 세계에 거주 장소를 갖지 못한 자의 피난처로서의 공공물이야말로 공공성을 체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외부인 공공공간으로 도피한, 갖지 못한 자들은 더욱 심하게 내몰리게 되었다. 빈곤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울타리 쳐진 세계에 거주 장소를 가질 권한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나 병자들과 함께 배제되고 수용·감금되며, 교정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되었던 것이다.<sup>14</sup> 홈리스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호시설이나 자립지원센터 등의 시설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취급한다는 것은, 사적인 울타리 치기의 세계에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것에 대한 격리수용 원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남겨진 얼마 안 되는 공공공간으로부터 노숙인들을 배제하는 가차 없는 폭력이 공공성이라는 이름 하에 행사되고 정당화되는 듯하다. 이는 공공공간에서 수상한 자를 감시하고 배제하는, 소위 ‘감시사회화’로 불리는 현상과 병행하고 있다. 감시사회화는 사람들의 사적으로 울타리 쳐진 영역을 공권력의 눈에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사적 영역보다 공공성 논리가 앞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래 공공영역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 왔던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됨과 동시에 제약된 것이었던 반면, 감시사회의 주체는 법적으로 정당화된 강제권한은 없지만 그 대신 법적인 통제도 벗어난 사적 개인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감시사회화는 공적인 것에 대한 사적 논리의 침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공익 보호나 공공성의 이름 하에 행해지는 노숙자의 배제도 사적인 논리로 일관되고 있다. 사적으로 울타리 쳐진 세계에 거주 장소를 갖지 못하므로 공공시설로 도망쳤는데, 이번에는 공원을 산책하는 데 눈에 거슬리니까 나가라는 것이다. 이는 조금 남겨진 공공공간을 더욱 사물화하는 논리다. 내가 쓰기 위해 다른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도 산책하기 힘들니까 장소를 양보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서 전면적으로 물러나라는 것이다. 이는 공원이란 공공공간의 전면적인 사물화이다. 공원을 소위 가진 자만의 회원제 시설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용 자격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을 가지고 집을 지니고 있는 주민일 것, 빈곤하여 집을 갖지 못한 자들은 이용 자격이 없다. 재산에 의한 차별, 아파트 헤이트apartheid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다.

갖지 못한 자로부터 이 세계 안의 거주할 장소를 빼앗고 배제하며, 나아가 그들의 피난처이어야 할 공공시설로부터 내쫓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살기 힘든 사회로 만드는 감시사회화도, 모두 다 사적인 울타리 치기의 논리로 일관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사 논리의 전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2) 배제(eviction)와 거주자의 자유

도시 공원이거나 하천부지,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 기거하고 있는 홈리스들을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 25조의 생존권이나 사회권규약 11조의 거주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이전에, 우선 첫째로 그들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sup>15</sup>

일본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상에 있어서 최대한도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개인이란 하나의 신체를 가진 존재이다. 그 개인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지표상의 일정 면적을 그 신체를 지탱하기 위하여 서거나 누워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일정 장소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존재에게 근원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일본 헌법 22조 1항은 “어떤 사람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 12조 1항도 거주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격 형성의 자유라고 하는 다면적·복합적 성격을 갖는 권리”이며, “사람과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근대사회가 존립할 수 있는 불가결의 요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sup>16</sup> 즉 ‘거주의 자유’는 봉건적 신분제 질서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토지와 신분에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대등하고 평등한 개인을 찾아내어, 자본주의질서를 기초 짓는 동시에 자유로운 사회, 민주주의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거주의 자유는 “자유권의 기초라고도 할 만한 인신의 자유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sup>17</sup>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 입헌민주제의 대전제로서의 의의도 갖고 있다.<sup>18</sup>

이 거주의 자유에는, ①자신이 거주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 필연적인 전제로서 ②반드시 어딘가에 거주할 자유, 거주하는 것 그 자체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장소 선택의 자유이며, 후자는 거주하는 것, 즉 이 지구상에 신체를 갖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의 권리여서 진정 존재권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이 존재권은 인간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의미에서의 생존이라고 하는 소위 생존권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자연권적 권리여서 이것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인신의 자유의 핵심을 이룬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인신의 자유란 “자기의 신체가 그 무엇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 “사람의 신체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유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그것 없이 자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인신의 자유의 핵심인 거주하는 자유의 박탈은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부정, 즉 죽음이다.

### 3) 사회적 배제

왜 사람들은 홈리스 상태에 빠지는가? 실업 등에 의한 노동 수입의 상실이 주된 원인이지만, 실업에 의해 곧바로 홈리스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이다. 일본에는 고용보험 제도도 있고 생활보호 제도도 있다. 수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거도 상실하고 홈리스 상태에 빠지는 것은 사회보장이나 주택보장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조노력형의 사회보장과 주택정책이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홈리스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중 고용과 고용보험으로부터의 배제 노숙자의 대부분이 건설 일용노동이나 서비스업 등 불안정 직업에 취업하고 있던 자이다. 일용노동자는 많은 경우 노무자 합숙소 또는 간이 숙박소를 거주 장소로 하고 있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도 합숙소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직에 따라 곧바로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으로 갈 위험이 높다. 노숙자를 산출하는 주된 요인은 ‘실업’이다. 그러나 실업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사회보장이나 취업 대책이 취해져 빈곤층에 대한 주택보장이 행해진다면 노숙까지 하게 될 일은 없다. 대부분의 일용노동 현장은 노동 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이 사실상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숙자를 계속 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일용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고용노동구직자 급부금제도’가 있는데, 실업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개월간 보험료를 통산 26일 이상 납부하고, 매일 실업인증을 받아 구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다. 이것은 일이 있다 없다 하는 일용고용노동자의 현실에 맞지 않고, 그 결과 일용고용노동자 피보험자수첩(백수첩)이 없는 노동자도 많다. 일본의 고용보험 제도는 원래 빈약하지만 많은 일용고용노동자에게는 그것조차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 생활보호로부터의 배제 최후의 생존권 보장의 보루가 되어야 할 생활보호 행정에서 도리어 노숙자 배제가 더 심하다. 65세 미만의 ‘노동연령층’의 경우 장애나 질병이 없는 한 보호하지 않는다는가, 원래 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신청조차 거부하는 위법적인 운용이 버젓이 통해 왔다. 일본의 노숙자는 집조차 잃은 극빈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부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왔다. 그것은 영국에서 노숙자의 약 40%, 독일에서는 70%가 공적급부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sup>19</sup>

일본에서도 노숙하면서 연금 등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금 신청 등에 있어서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인의 집을 주소로 등록하는 등 편법을 쓰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빌려준 지원자까지 체포했기 때문에 바로 주소재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생활보호 상담 및 신청부터 시작하여 생활보호법 운영상의 문제점은 들어 볼수록 한이 없다. 그러나 노숙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활보호 행정소송 사례는 실제의 사건 수에 비한다면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생활보호 신청을 희망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보호 실시기관의 청구에서 부당한 이유로 내쳐지더라도 행정기관이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만다든지 포기해 버리고 만다든지 하는 일이 많고, 또 본래 소송 방법을 알지 못하는 점 등이 원인이다. 많은 생활 빈곤자가 생활 곤궁에 빠진 것에 대하여 자책감을 갖고 있으며, 법 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권리의식도 낮아 행정에 종속하기 쉽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또한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면 행정 불복 심사 등으로 다루는 일 자체도 곤란하다. 따라서 상당히 세심한 지원체제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때문에 복지사무소에서 벌어지는 생활보호 신청 거부 등의 위법 행위도 가시화되는 일이 적고 법적인 통제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주거가 없기 때문에 혹은 단지 나이가 젊어서 일할 수 있다는 위법한 이유로 생활보호로부터 노숙자를 배제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된 것이 나고야의 하야시 소송이다. 쟁점은 생활보호법 4조 1항의 능력 활용 요건에 대한 해석이었다. 행정관청은 당초 거주지가 없고 노동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1심에서 이유를 바꾸어 노동 능력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 요건을 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나고야 지방법원은 노동 능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 능력을 활용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고 나아가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나고야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판결의 해석을 채용하면서도 단지 유효 구인배율이나 신문에서의 구인광고의 존재 등 표면적인 이유로 단순히 취업의 장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것은 노동 능력 활용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판결(처분취소 부분)을 취소하였다. 최고법원은 하야시 씨의 사망에 따라 취소소송에 대한 종료를 선언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최고법원은 1심 및 항소심이 채용한 노동 능력 요건에 관한 해석을 받아들였던 것이며, 주거가 없고 노동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거부하는 운용 방식에 대하여는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숙자라 하더라도 생활보호를 수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 진정 노숙자의 인권선언이라고 할 만한 의의를 가진 소송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의 구조개혁 하에서 생활보호 행정 전체가 축소되고, 노동연령층의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부터 한층 엄격한 취업 ‘지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2002년의 홈리스 자립지원법 제정 후 대도시 지역에서는 홈리스들에게 생활보호에 앞서 쉼터와 자립지원센터 입소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홈리스들의 생활보호 수급을 억제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렸다. 다른 한편 공원 등에서 천막 같은 것을 철거할 때 생활보호가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 때문에 홈리스 자립지원법에 의한 지원책이 홈리스들에게 새로운 배제와 열등한 처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이나 생활보호조차 배제의 수단이라고 하는 극단론마저 나타나고 있다.

#### 4. 반 배제와 자립지원의 논리

##### 1) 노숙 행위의 정당화

왜 원래 흙리스들은 이 세계에서 거주 장소를 잃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인간은 누구라도 이 세상 안에 살아갈 권리, 거주 장소를 가질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따져 본다면,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닌 토지에 대해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말았던 점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가 정당한가라는 자본주의적 소유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 문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토지의 사적 소유, 자본주의체제의 전제는 봉건적 신분관계 및 공동체로부터의 개인의 해방, 거주 이전의 자유의 승인에 의해 비로소 성립되었다. 그러나 토지의 사적 소유에 따라 궁핍한 사람들이 일정한 토지·건물에 거주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생겼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의 전제인 거주 자유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설을 낳고 있는 것이다.<sup>20</sup>

따라서 토지의 사적 소유 체제를 유지하는 한, 그 대전제인 모든 사람의 거주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 된다. 어디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에 거주할 자유에 대하여는 일정한 정도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에 있는 어디든 거주할 수 있는 자유, 거주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 우리들 인간은 육체 없이 존재할 수도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중에 떠서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디든 일정한 지표면을 서고 눕고 자고 먹는, 소위 기와침식(起臥寢食)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자유를 갖는다. 인신(人身)의 자유의 전제로 일정한 지표면을 생명 활동을 위하여 이용할 권리, 거주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시장에 의한 부의 분배와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필연적으로 실업 등에 따른 빈곤을 산출하고, 바로 그 때문에 구빈책, 생활 수단의 재분배로서의 생존권 보장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흙스도 『리바이어던』에서 구빈 제도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다) 토지의 자본주의적 소유에 따라 거주할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주할 자유에 대한 보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상식』 Common Sense을 저술하여 미국 독립혁명의 이론가가 되었던 토머스 페인은 「토지 배분의 정의」(1794~1795)<sup>21</sup> 중에서, 원래 토지는 ‘인류의 공유 재산’이고, 인류의 일원이라면 누구든지 평등한 이용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자연권적 상속권으로서의 토지 이용권을 박탈당하고 빈곤과 비참이 생겨났다고 비판한다(p.161). 그리고 ‘소유물을 가로채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상하기 위한 국민기금의 창설을 제안한다. 이 기금에 의한 급부(給付)는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다. 즉 박애가 아니라 정의이다”라고 단언한다(p.168).

토지 소유 제도, 즉 자본주의질서의 기초를 확립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연권적 권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갖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은 사회와 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페인의 주장은 생존권 보장의 기초 부여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토지 소유 제도에 따라 거주할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와 그 보상 제도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이기도 한 것이다.

홈리스들은 사적으로 울타리 쳐진 토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책임으로 일정한 토지에 거주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거주할 자유의 승인이다. 그리고 둘째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같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거주 허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에 걸맞는 거주 장소의 확보를 요구할 권리의 승인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권규약 11조의 거주권 및 일본 헌법 25조가 보장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의 문제이다.

또 공원에 거주할 자유란 노숙할 권리가 아니라 거주하는 것 자체의 자유보장이다. 공원에 천막을 치고 거주할 자유를 인정하라는 것은 현재의 사유재산제의 논리로 보면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나, 역으로 사유재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한 자가 공원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한 노숙은 용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사유재산제에 따라 사회 안에서 거주할 자유를 빼앗긴 홈리스들에게는 국가, 사회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줄 책무를 져야만 한다. 이는 헌법 25조 및 생활보호법, 공영주택법에 따라 국가에 부과된 의무인 바, 그것이 개인의 구체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든 아니든 국가가 입법 조치 등을 강구하여 이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한, 공원에서 노숙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서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위법한 부작위에 의해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거주 장소를 빼앗기는 중대한 위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신체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공시설에서 거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정당방위가 성립한다(일본 민법 720조 1항). 거주할 장소를 잃고 노숙으로 내몰리고 있는 원인이 국가나 보호실시기관의 위법한 부작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형법상의 긴급피난은 성립한다(일본 형법 37조).

## 2) 자립지원책과 자유

자립지원책은 홈리스들의 자립 의사의 존중을 대전제로 하고 홈리스들의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자립’이란 무엇인가? 지금껏 자립이라고 하면 혼자 힘으로 타자의 원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특히 경제적 자립을 의미해 왔다. 이것을 편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자립’이라 부른다. 홈리스 자립지원법의 ‘자립’이 그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자립’의 관념에서 보면 홈리스들이야말로 회사의 신세도 지지 않고, 국가(생활보호나 사회보장)의 신세도 지지 않고 글자 그대로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살고 있는 가장 자립한 사람이다.

‘자립’을 위해 안정된 거주 장소나 고용 장소의 확보 등 적극적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립과 원조(보호)를 양자택일적으로 파악하는 넓은 자립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과는 별개의 의미를 갖지 않는 한 자립지원의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자립이란 무엇인가? 타자의 원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니다. ‘자립’이란 타자의 원조를 받더라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자기결정에 따라 살아갈 기회를 보장받는 상태이다.

따라서 어떤 시책이 자립지원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부는 그 지원책을 이용하는 자의 자유가 보다 증대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선택지를 이용자가 활용 가능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의해 한층 더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행하는(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어야 한다.<sup>22</sup> 다양한 사회제도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의 활용 가능성이나 활용할 능력이 낮다면 그들 제도를 활용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립지원이란 사회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매개적 역할도 수행하는 지원책을 준비하면서, 당사자의 활용 가능성, 바꾸어 말하면 자유를 제고해 가는 것이다.

자립지원책에 의하여 제공되는 거주 장소가 당사자에게 안정된 거주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단지 객관적인 조건, 예를 들면 건물의 구조나 거주 공간의 넓이, 쾌적함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안정된 거주의 장이란 그것을 당사자가 이용하여 보다 쾌적하게 안정된 생활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장래를 열어 갈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가 아닌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즉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주관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지원책이 자립지원책으로 유효한 것인가 아닌가는 지원책과 당사자의 개인적 조건과의 적합성, 당사자의 시책 활용 가능성에 달린 것이다. 또한 거주의 장소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고정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 타자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웃, 지역사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히 괴롭힘을 당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트러블이나 불편함에 의해서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천막보다도 자립지원센터가 좋다는가, 아파트 쪽이 좋다는가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천막이나 움막을 치고 폐품이나 폐자재를 활용하는 일을 해서 일정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아파트에 들어가고 나면 이러한 일은 할 수 없게 된다. 움막 치는 것보다 냉난방 완비의 아파트 쪽이 보다 쾌적한 거주조건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이 끊기면 생활보호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공원이나 하천 부지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인근 주민의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나, 아파트 생활에서는 이웃과의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 아파트에 들어가더라도 이웃의 눈과 귀에 신경 쓰고 긴장하며 지내야 한다면 아무래도 쾌적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당사자를 교육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이 견해가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라는 재화를 활용할 때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당사자의 특성은 아파트나 천막이나를 선택하듯이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리하게 환경에 적응하게 하더라도 잘 지내지 못하고 당사자가 좌절감을 맛보게 되어 보다 좋은 생활을 희망할 의욕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아파트조차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규칙 위주로 엄격하고 인간다운 생활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쉼터나 자립지원센터로 입소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욕을 꺾어 버려 삶의 가능성을 막을 위험이 한층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자립지원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를 확대하고 당사자 자신의 의욕을 높여 기운차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강제적인 조치나, 힘내라고 하는 격려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 5. 세계의 개조

홈리스 문제란 누구든지 사용하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할 이 세계를 사적으로 자르고 울타리 친 것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사적으로 얼마나 잘 울타리를 칠 것인지 그 방법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실수로 밀려난 자, 배제되는 자를 없앨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세계를 나누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공간의 분할, 공-사(公-私)의 선 긋기를 무효로 하는 건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그리고 나의 것으로서의 ‘보금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공적인 권력에 노출되어 일상적인 생활 행위를 모두 공적인 권력 및 공중의 면전-감시 앞에서 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다. 거실뿐 아니라 침대 위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공권력의 감시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간에 대한 선 긋기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지금처럼 공사로 나누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 울타리 치기와 배제로 귀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를 그리는 방법은 있을 것인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세계를 새롭게 개조하는 것.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정상으로 되돌리기 Normalization, 즉 세계 변혁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세계는 사물이며 그 사물의 배치에 따라 세계의 모습은 결정된다.<sup>23</sup> 세계라는 사물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배치하여 사람의 주거로 삼는 것은 사람들의 일이다.<sup>24</sup> 세계라는 사물을 무대로 사람들은 만나고 대화하고 활동한다.

그래서 “세계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있기 위해서는, 즉 사람들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거할 집이기 위해서는, 인간은 활동과 언론에 적합한 장소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sup>25</sup>

세계를 인간의 거주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 세계라는 사물 위에 장소를 점할 수 없다면 타자와 만나고 대화할 수 없다.

그러나 홈리스들은 세계 위에 거주 장소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홈리스들은 세계 밖으로 배제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다.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물리적으로 조우하는 일은 있으나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만남은 아니다. 만나야 할 장소, 만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홈리스에게는 오로지 절망만 있을 뿐인가?

그렇지는 않다. 세계의 상실로부터 세계의 창출로의 가능성도 홈리스라는 것 가운데 실은 포함되어 있다. 홈리스들은 확실히 이 세상에서 거주 장소를 빼앗기고 항상 불안으로 내쫓기고 있는 존재다. 그러나 이 불안이 또 하나의 자유로운 자신과 또 하나의 자유로운 세계를 열 가능성도 감추고 있다.

불안을 안고 있는 것은 홈리스들만이 아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홈리스들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 이 불안이야말로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단절된 사람들을 서로 만나도록 하는 호소가 된다.

불안은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으로서, 그 안에서 열어 밝혀진 현존재 자신과 더불어 함께 현존재의 근원적인 존재전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적 토대를 제공한다.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로서 밝혀진다.— 『존재와 시간』, 249쪽

불안의 '그것 앞에서'는 세계-내-존재 그 자체다.—『존재와 시간』, 254쪽

불안은 현존재 안에서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으로 향한 존재를 드러내 준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장악하는 자유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를 드러내 준다.—『존재와 시간』, 256쪽

불안이 세계 내에 있는 우리들을 서로 끌어당기도록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의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집에 사는 사람들은 홈리스들에게 위화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쓰여 불안해하며 그들을 만나러 간다. 홈리스들은 자신의 존재를 혐오하고 무시하며, 습격하고 내쫓는,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품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게 된다. 단 한 번의 말 걸기만으로 서로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걱정 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서히 만남이 진행되는 것이다.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야간 순찰, 페트롤이란 그와 같은 여유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내쫓기거나 습격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항상 거주하는 것, 홈이라는 것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홈리스들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진정 거주하는 것의 고난(거주난Wohnungsnot, plight of dwelling)이라는 것은 다음의 것에 있다. 즉 죽어야 할 자는 항상 거주하는 것의 본질을 새롭게 탐구하지 않을 수 없고, 거주하는 것을 항상 배워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인간의 집없음Heimatlosigkeit, homelessness이란 것이, 인간이 거주하는 것의 진정한 고난을 아직도 현재의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집없음homelessness을 사고하든 아니든, 더 이상 비참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것은 죽어야 할 자를 그들의 주거로 불러들이는 유일한 호소인 것이다. 그러나 죽어야 할 자들은 이 호소에 대하여 자신 쪽에서, 자기들 자신으로부터 거주하는 것을 그 본질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는 것 이외에 어떤 식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인가? 죽어야 할 자들이 이 호소에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거를 계속 지어 나가면서 주거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이다.<sup>26</sup>

홈리스라는 것은, 홈이라는 것은,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계속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천막을 세우고 동료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계속 묻는다. 천막이 없는 노숙자도 매일 잠잘 곳을 찾고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한다는 것, 그리고 거주 장소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새롭게 주거를 만들고 세계를 바꿀 기회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홈리스들은 자신이 삶을 이어 나가기 위해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삶을 이어 가기 위하여 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원을 경작하고 작물을 팔며 또 하나의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노숙자가 공원에서 경작하고 작물을 길러 인근의 주민들이나,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작물을 판다. “어, 맛있네. 값 싸네”라고 인근 주부가 작물을 집으며 품평을 한다. “무농약이라 안전해요. 건강에 좋구요”라고 노숙자가 대답한다. 위생적이지 않다는가 위험하다고

들어 왔던 사람들이 경작하여 넘긴 작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라며 즐겁게 먹는다. 노숙자가 우유팩을 재활용하여 그림엽서나 표찰을 만들어 가두에서 판다. 아이들이 예쁘다 귀엽다고 말하고 노숙 아저씨들에게 웃으며 “이것 주세요”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보챈다. 이제까지 집에서 사는 시민들에게는 혐오나 증오, 무시나 배제의 대상에 불과했던 홈리스들과의, 괴롭힘이나 배제나 습격과는 다른 형태의 만남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만나는 방법을 바꾸는 것, 이것에 의해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의 신진대사나 노동력의 소비이기만 한 노동과는 다른 일이다. 다시 말해 동료들과 연대하여 타자와 만나는 장, 즉 세계를 만들어 내고 변혁하는 일이다. 사물로서의 세계를 바꿈과 동시에 세계라고 하는 관계성,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 연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사람들이 구축하는 작업에 의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세계는 만들어지고 변혁되는 것이다.<sup>27</sup>

홈리스란 세계 안의 거주 장소, 즉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홈리스들이 얼마 안 남은 공공시설이나 길 위에서 천막을 치고 골판지박스로 살 집을 만들어 내쫓김과 싸워 갈 때, 그러나 항상 거주하는 것을 걱정하도록 강요당할 때 그들은 이 세계를 변혁할 가능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소재판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은 공원에서 노숙할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홈리스들이 공원에서 거주하고 공원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거주 장소를 빼앗긴 홈리스들이 공원에 천막을 치고 경작하며 동료들과 연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내어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었다는 것, 그리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공권력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홈리스들에게도 집에서 사는 시민과 마찬가지로 주소를 인정하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하여,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나 시민으로서의 권리,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집을 지어 사람들의 만나는 방식과 세계를 변혁하는, 그러한 거주 방식이 사실상 존재한다는 것을 법의 세계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이 재판의 의의인 것이다.